

학점은행제 법령 등 관련 FAQ

□ 소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침이 제·개정되어 일부 변경된 학점인정기준에 대해 FAQ를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 FAQ

Q1.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독학학위제 과목 중 회계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과목이 있어 학점은행제를 통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인정이 가능한가요?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학위의 과정별 시험합격 또는 면제 교육과정 이수결과는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과목으로 타 시험응시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또는 학교)에 독학학위제 학위에 대해 상담을 받아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 관련 조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4호 바목

Q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취득한 자격증이 있는데, 해당 자격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과정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이수한 학점들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단, 중요무형문화재 제외). 자격도 해당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 시절 취득한 자격은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시행령 시행 전(2015.9.27까지)에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개정 법령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관련 조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비교2

Q3. 4년제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경영학 전공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4년제 재학 시절 물류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자격을 학점은행제 학위 과정에 학점인정 받을 수 있나요?

학위취득 전 이수학점은 학점은행제 타전공 과정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자격과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타전공 과정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 의거 모든 학점원이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시행령 시행 전(2015.9.27까지)에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개정 법령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타전공 과정이란 : 학사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진행하거나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임.)

○ 관련 조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비교5

Q4. 이번 2분기 학점인정신청한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에 대해 재심의를 받고 싶습니다. 재심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학점인정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결과 통보(학점인정서 발급일 기준) 후 30일 이내에 학점인정 재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일정 및 제출서류 등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매 분기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재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2분기에 인정받은 학점이라면 바로 다음 3분기 재심신청기간에 재심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매분기 공지되는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IV.학점인정 기준 및 절차-3.학점인정 절차